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도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64

발의연월일: 2025. 1. 6.

발 의 자: 안도걸 • 주철현 • 이개호

조인철 • 서삼석 • 김문수

권향엽 • 박지원 • 김원이

조계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」은 비수도권의 집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·고시된 지역에 대해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관련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,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.

따라서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한 중소·중견·대기업 취업 근로자의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9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9(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) ①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체 근로자가 그 기업체(특구 지정 이후 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, 신·증설사업장을 말한다)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(과세기간별로 500만원 한도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고, 그 다음 5년간은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을 계산할 때 병역 이행기간 및 육아휴직기간만을 제외한다.

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및 기준,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 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업 취업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 그 지역에 입주한 기업체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9조의9(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
	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) ①
	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
	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
	지정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체
	근로자가 그 기업체(특구 지정
	이후 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
	업, 신·증설사업장을 말한다)
	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
	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
	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
	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
	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(과세
	기간별로 500만원 한도로 한다.
	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고, 그
	다음 5년간은 소득세의 100분의
	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
	다.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을
	계산할 때 병역 이행기간 및 육
	아휴직 기간만을 제외한다.
	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
	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및
	기준,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

<u>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</u> <u>항을 준용한다.</u>